고급 인력의 유치 및 정주 지원을 위한
비자·체류 제도 조사

2026.3월

본 보고서는 학술적 연구 및 공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상업적 용도로의 활용은 제한됩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특정 기업 활동, 금융 투자 또는 법률적 판단의 근거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고급 인력의 유치 및 정주 지원을 위한 비자·체류 제도 조사

('26.3월, 글로벌금융허브실)

1 서론

□ 검토 배경

○ 국제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해서는 글로벌 인재 유치가 필수적

- 주요 금융중심지들의 해외 전문 인력 유치를 위한 비자 제도를 조사하여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설계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부산 금융중심지에 유입된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

- 인재 정착을 위한 장기 비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검토하여 부산 금융중심지에 글로벌 인재가 정착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장기적으로는 국제학교, 영어 사용 확대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 정주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

□ 해외 금융중심지의 대표적 비자·체류 제도

구분		대상자 (대상별 자격요건 충족시)	기간[1]	가족초청신청 (요건 충족시)
베트남 (베트남국제금융센터)		국제금융중심지 내 사무소를 둔 기관·조직의 고숙련근로자, 관리자 및 전문가와 핵심투자자	최대 10년	가능
카자흐스탄 (아스타나국제금융센터)		AIFC 투자거주자, AIFC 등록기관 및 AIFC 당국의 직원	최대 5년	가능
홍콩	TTPS	고소득자와 적격 대학 졸업자 등	36개월/24개월	가능
	QMAS	일반점수제 또는 성취기반점수제를 통과한 고급인재	36개월/8년	
싱가포르	One Pass	사업·예술·문화·학술·연구분야 최고급인재	최대 5년	가능
두바이 (UAE)	Golden Visa	투자자, 기업가, 탁월한 인재 등	5년, 10년	가능

자료 : 베트남·카자흐스탄 법령, 홍콩 이민국, 싱가포르 인력부·경제개발청, UAE ICP 등

1) 베트남국제금융센터는 비자·임시거주증의 유효기간, 아스타나국제금융센터는 입국비자의 기간, 홍콩은 체류 기간, 싱가포르는 work pass의 기간, 두바이(UAE)는 체류 기간임.

2 베트남국제금융센터(VIFC)

구분	대상자 (대상별 자격요건 충족시)	기간	가족초청신청 (요건 충족시)
베트남국제금융센터	국제금융중심지 내 사무소를 둔 기관·조직의 고숙련근로자, 관리자 및 전문가와 핵심투자자	최대 10년	가능

자료 : 베트남 법령

□ 베트남은 호치민과 다낭을 국제금융중심지로 지정

○ '25.7월 설립의 법적 근거인 Resolution No. 222/2025/QH15가 통과되었고 '26.1월 VIFC-DN(Da Nang) 개소 및 '26.2월 VIFC-HCMC(Ho Chi Minh City) 개소

○ 근거 법령들을 통해 국제금융중심지에 조세, 비자 등의 혜택을 부여

□ 국제금융중심지 비자·체류(Visa·Residence)

○ 국제금융중심지 내 사무소를 둔 기관·조직의 외국인 고숙련 근로자, 관리자 및 전문가와 핵심 투자자에게 최대 10년의 유효 기간을 가지는 비자·임시거주증을 발급할 수 있음(동반 가족에게도 비자·임시거주증 발급 가능)[2)]

* 비자는 외국인의 베트남 입국을 허용하며, 임시거주증은 일정 기간 동안 베트남 내 외국인의 거주를 허용하며 비자를 대체하는 가치가 있는 서류[3)]

** 관리자, 고위관리자, 전문가, 고숙련근로자 해당 여부 판단은 Decree No. 219/2025/ND-CP를 따름

○ 국제금융중심지에 사무소를 둔 기관·조직에서 장기간 일하는 고위 관리자, 특별한 재능을 가진 개인, 과학자, 전문가, 핵심 투자자는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면 베트남 영주권 부여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음[4)]

- 국제금융중심지에 사무소를 둔 기관·조직에 장기 근무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와 해당 조직에 3년 이상 연속 근무한 사실이 있을 것과 장관, 전문분야에서 국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 직속 기관의 장 또는 장관급 기관의 장 또는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또는 다낭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을 것

○ 베트남 영주 외국인은 10년마다 영주권 갱신을 위해 이민 당국 방문 필요[5)]

2) Resolution No. 222/2025/QH15, Article 20
3) 베트남 내 외국인의 출입국, 경유, 거주법 제3조(국회도서관 번역본)
4) DECREE No. 327/2025/ND-CP, Article 5
5) DECREE No. 327/2025/ND-CP, Article 6

□ (참고) 베트남의 비자 제도[6)]

○ '20.7월 베트남 출입국법 개정 시행에 따라 전자비자 신설, 투자자 비자(DT) 개정, 노동 비자(LD) 개정 등이 이루어짐

- 투자자 비자는 단일 DT 비자에서 투자 금액 등에 따라 DT1~DT4 등으로 분화

- 노동 비자는 단일 LD 비자에서 노동 허가 면제를 기준으로 LD1, LD2(노동 허가 필요한 자)로 분화

3 아스타나국제금융센터(AIFC)

구분	대상자 (대상별 자격요건 충족시)	기간	가족초청신청 (요건충족시)
아스타나국제금융센터	AIFC 투자거주자, AIFC 등록 기관 및 AIFC 당국의 직원	최대 5년	가능

자료 : 카자흐스탄 법령 및 규제

□ 카자흐스탄은 아스타나를 금융중심지로 육성

○ Constitutional Statute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on the Astana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가 '15년 채택되었고, AIFC가 '18년에 공식적으로 출범

○ 근거 법률에 의해 AIFC법원 설립, 조세 혜택 등 금융허브 육성을 위한 제도 도입

○ AIFC Expat Centre는 비자 절차 지원과 정부 서비스 신청 지원 등 외국인과 그 가족의 정착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 제공(서비스 비용 발생할 수 있음)

□ AIFC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비자 제도[7)]

○ AIFC에서의 활동을 위해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카자흐스탄 대사관이나 외교공관 또는 카자흐스탄 입국시 국제공항에서 입국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음

○ AIFC 투자거주자, AIFC 등록 기관 및 AIFC 당국의 직원인 외국인과 그 가족은 최대 5년 기간의 입국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음

6) 김찬영, 베트남 출입국법 개정 최대 10년 체류 가능, 코트라, 2020.7.13.
7) Constitutional Statute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on the Astana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Article 7

정주여건

○ 상술한 두 비자는 카자흐스탄 법령에 따른 AIFC 당국의 신청에 의해 연장 가능

□ (참고) 카자흐스탄의 비자 유형[8)]

○ 카자흐스탄은 투자자와 근로자 등을 위해서 Investor Visa(A5, A6)와 Employment Visa(C3, C4, C5, C6) 등의 비자 제도를 운영 중

○ 카자흐스탄 영구 거주를 위한 비자로는 B8, B9(수요가 높은 직종의 전문인력), B9-1 디지털 노마드 비자, C1(카자흐 민족)을 운영 중

4 홍콩

구분		대상자 (대상별 자격요건 충족시)	기간	가족초청신청 (요건충족시)
홍콩	TTPS	고소득자와 적격 대학 졸업자 등	36개월/24개월	가능
	GEP	홍콩에 필요하나 공급이 부족한 분야의 기술·경력 등을 갖춘 사람	Min(36개월, 고용기간)	
	TechTAS	기술 R&D 수행 인력		
	IANG	비현지졸업생, GBA(Guangdong-Hong Kong-Macao Greater Bay Area) 캠퍼스 졸업생	24개월	
	QMAS	일반 점수제 또는 성취 기반 점수제를 통과한 고급 인재	36개월/8년	

자료 : 홍콩 이민국

□ 홍콩의 인재 유치 전략

○ 해외 고급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Top Talent Pass Scheme(TTPS), Quality Migrant Admission Scheme(QMAS)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HKTE(Hong Kong Talent Engage)를 통해 인재 정착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입국허가(Visas·Entry Permits) 제도

○ Top Talent Pass Scheme(TTPS)[9)]

- 고소득자와 적격 대학[10)] 졸업자 등 최상위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제도로 홍콩에서의 고용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신청 가능

8) 주한카자흐스탄 대사관(https://www.gov.kz/memleket/entities/mfa-seoul/press/article/details/163007?lang=en)
9) Hong Kong Immigration Department(https://www.immd.gov.hk/eng/services/visas/TTPS.html)
10) 대학 리스트는 https://www.immd.gov.hk/pdf/aggregate_list.pdf에서 확인 가능

- 일반적인 출입국 요건 충족을 전제로 카테고리 A는 36개월, 카테고리 B·C는 24개월의 체류 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음

① 카테고리 A : 신청일 직전 1년간 연소득이 250만 홍콩 달러(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화 금액) 이상인 자

* '26.3월말 기준 1HKD는 약 192.7원

② 카테고리 B : 적격 대학의 학사 졸업자로 신청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의 근무 경력을 갖춘 자

③ 카테고리 C : 신청 직전 5년 이내에 노동복지국이 지정한 적격 대학을 졸업(학사)하고 근무 경력 3년 미만인 자(연간 쿼터 적용)

- 가족* 초청을 신청 가능

* 배우자, 현지법에 따라 체결되고 현지 당국의 법적·공식적인 인정을 받는 동성결혼 등의 상대방, 18세 미만의 미혼인 부양 자녀

- 체류 연장 신청시 홍콩에 요건을 충족하는 직장을 구했거나 창업 또는 사업에 합류했음을 증빙해야 하며, 연장 기간은 3년 미만의 기간 또는 고용 계약 종료일까지 중 더 짧은 기간(사업 설립·합류자는 다양한 요건 고려해 기간 결정)

○ General Employment Policy(GEP)[11]

- 홍콩에 필요하지만 공급이 부족한 분야의 기술·경력 등을 갖춘 사람 대상의 제도

* 본토의 중국인 거주자는 적용 제외

- 심사 기준

① 보안상 거절 사유·알려진 중대 범죄 전력이 없을 것

② 학력 요건(일반적으로 관련 분야 학사 학위, 특별한 상황에는 문서로 증빙 가능한 기술 자격, 전문 역량 등 인정 가능)

③ 실제 결원이 있을 것

④ 채용이 확정되고, 해당 일자리가 본인의 학력·경력과 관련되며 현지 충원이 어려운 것이어야 하고, 급여·복지 등은 홍콩 전문 직군에 대한 시장 수준에 준할 것

11) Hong Kong Immigration Department(https://www.immd.gov.hk/eng/services/visas/GEP.html)

- 가족 초청을 신청 가능

- 최초 체류 기간은 일반적으로 36개월 또는 고용 계약 기간 중 짧은 기간이 부여되며 GEP 자격 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연장(3-2년 패턴) 검토가 가능

○ Technology Talent Admission Scheme(TechTAS)

- 기술 R&D 수행 인력의 고용을 위해 기업이 쿼터를 신청하는 방식

- 심사 기준[12)]

① 보안상 거절 사유·알려진 중대 범죄 전력이 없을 것

② 고용한 회사가 쿼터 보유

③ 신청자가 자격 요건을 갖출 것 : 홍콩에서 풀타임으로 채용된 근로자일 것, 주로 기술 관련 R&D를 수행할 것, 명문대 STEM* 학위자(학사는 1년 이상 경력, 석박사는 무관/학위기준 충족하지 못하나 검증된 전문 능력 등을 갖춘 경우 사안별로 검토)일 것, 보상 수준이 유사 직종 시장 수준보다 낮지 않을 것

* Science(과학), Technology(기술), Engineering(공학), Mathematics(수학)

④ 쿼터 배정시 안내된 해당 일자리에 대한 요건을 충족할 것

⑤ 채용 회사와 신청자의 신의성실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을 것

- 가족 초청을 신청할 수 있고, 최초 체류 기간은 일반적으로 36개월 또는 고용 계약 기간 중 짧은 기간이 부여되며 TechTAS 자격 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연장(3-2년 패턴) 검토가 가능[13)]

○ Immigration Arrangements for Non-local Graduates(IANG)[14)]

- 비현지 졸업생*과 GBA 캠퍼스 졸업생**이 홍콩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홍콩에서 전일제로 현지에서 인정된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비현지인 학생

** 중국 본토와 홍콩의 대학이 공동으로 설립한 GBA(Guangdong-Hong Kong-Macao Greater Bay Area) 내 고등교육기관에서 전일제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졸업일로부터 6개월을 기준으로 최근 졸업생과 비최근 졸업생으로 분류

12) Technology Talent Admission Scheme Application Guide - TechTAS 02(12/2025)
13) Hong Kong Immigration Department(https://www.immd.gov.hk/eng/services/visas/TECHTAS.html)
14) Hong Kong Immigration Department(https://www.immd.gov.hk/eng/services/visas/IANG.html)

① 비현지 최근 졸업생, GBA 캠퍼스 최근 졸업생은 신청시 채용 확정 불요

② 비현지 비최근 졸업생, GBA 캠퍼스 비최근 졸업생은 신청시 채용 확정 필요

* 주로 학위 취득자가 취업하는 수준이고 보상이 시장 수준의 일자리이면 긍정적 검토

- 가족 초청을 신청 가능

- 최초 체류 기간은 일반적으로 24개월이 부여되며 학위 취득자가 주로 취업하는 수준이고 보상이 시장 수준인 고용 제안을 확보(창업하거나 사업에 합류한 사람은 증빙 필요)해야 연장(3-3년 패턴) 검토가 가능

○ Quality Migrant Admission Scheme(QMAS)[15]

- 고급 기술·재능을 갖춘 인재의 정착을 위한 제도로 사전 고용 확보가 불필요

- 사전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 점수제(학력, 언어, 경력, 소득, 사업 소유 등 평가) 또는 성취 기반 점수제(뛰어난 재능 또는 기술과 탁월한 업적을 갖춘 개인) 중 하나를 선택해 평가받을 수 있고 일반 점수제**의 합격점을 넘거나 성취 기반 점수제***의 두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면 정기적인 선발 심사의 대상이 됨

* 나이(18세 이상), 재정(부양 능력), 범죄 전력 등이 없을 것, 기본 학력

** 나이(50세 이하), 학력, 언어, 경력, 소득, 사업 소유 등을 평가

*** ① 특별한 성취로 수상(올림픽 메달, 노벨상 등) 또는 ② 성과가 동료에게 인정받거나 분야 발전에 상당히 기여했다는 것을 증빙(업계 공로상 등)

- 가족 동반 가능

* 공적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가족 부양과 거주지 마련이 가능하다는 전제

- (연장 : 일반 점수제) 최초 체류 기간은 일반적으로 36개월이 부여되며 연장하려면 홍콩 정착을 위한 조치를 취했음을 증빙해야 하고 추가로 연장하려면 홍콩에 정착하고 기여했음을 증빙해야 함

* 연장시 보통 3+2년 패턴

- (연장 : 성취 기반 점수제) 통상 8년의 체류 기간이 부여되며 연장 필요시 자기 재원으로 본인과 부양가족을 부양하고 거주지를 조달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함

15) Hong Kong Immigration Department(https://www.immd.gov.hk/eng/services/visas/quality_migrant_admission_scheme.html)

□ (참고) 투자 유치를 위한 비자·입국허가(Visas·Entry Permits) 제도

○ New Capital Investment Entrant Scheme(New CIES)[16]

- 홍콩에 인재 및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제도
- 심사 기준

① 나이 : 18세 이상

② 대상 : 외국인, 해외 영주권을 취득한 중국인, 마카오 주민, 대만 거주 중국인

③ 순 자산 : 3천만 홍콩달러 이상

④ 3천만 홍콩달러 이상을 허용된 자산에 투자

⑤ 불리한 이민 기록이 없을 것

⑥ 기타 : 부양 능력

- 가족 동반 신청 가능
- 24개월 이내의 체류 기간이 부여되며 연장 신청시 통상 3년 이내의 체류 기간이 부여되고 홍콩에 7년 이상 계속하여 통상 거주한 경우 영주권* 신청 가능[17]

* 홍콩 헌법상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6개 카테고리 중 하나는 유효한 여행증명서를 소지하고 홍콩에 진입하여 연속 7년 이상 통상 거주하고 홍콩을 영구 거주지로 삼는 중국 이외 국적의 사람임

5 싱가포르

구분		대상자 (대상별 자격 요건 충족시)	기간	가족초청신청 (요건충족시)
싱가포르	EP	일정 금액 이상 급여 요건을 충족하는 자	최대2년	급여별 상이
	Entre Pass	요건 충족하는 기업가	최대1년	가능
	PEP	고소득 EP 소지자, 전문가	최대3년	
	One Pass	사업·예술·문화·학술·연구 분야 최고급 인재	최대5년	
	Tech. Pass	소득·경력 요건을 갖춘 기술 인재	2년	

자료 : 싱가포르 인력부·경제개발청

16) Hong Kong Immigration Department(https://www.immd.gov.hk/eng/services/visas/newcies.html)
17) Rules for the New Capital Investment Entrant Scheme, 35-36p.

정주여건

□ 싱가포르의 인재 유치 전략

○ 저출산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해외인력을 유치하고 있으며 Overseas Networks & Expertise Pass(ONE Pass) 등 고급 인재를 위한 장기 비자 제도로 정착을 유도

□ 전문 인력 유치를 위한 Work Pass

○ Employment Pass(EP)[18]

- 싱가포르 취업을 제안 받은 외국인 전문가, 관리자, 경영진, 기술자를 위한 제도

- 자격 요건

① 임금 요건 : 5,600 SGD 이상(금융 분야는 6,200 SGD, 나이에 따라 상향)
* '26.3월말 기준 1SGD는 약 1,174.89원

② Complementarity Assessment Framework(COMPASS) 통과 : 대상 개인(급여, 자격 등)과 고용 기업(다양성, 현지 고용 등)을 평가해 40점 이상 획득 필요

- 월급이 6,000 SGD 이상이면 법적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를 Dependant's Pass(DP)로 초청 가능하고 급여가 12,000 SGD 이상이면 부모를 Long-Term Visit Pass(LTVP)로 초청 가능

- 최초에는 최대 2년의 기간을 부여하며 갱신 가능(최대 3년 단위)
* 단, 공급이 부족한 분야의 경력을 갖춘 기술 전문가는 최대 5년의 Pass 부여 가능

○ EntrePass[19]

- 외국인 기업가가 싱가포르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자격 요건(둘 다 충족)

① 싱가포르 기업청(ACRA) 등록(30% 이상 지분 보유)되었고 벤처 투자 받거나 혁신 기술을 보유한 개인 유한 책임회사를 창업했거나 창업할 예정인 자

② 다음 중 최소 한 가지 요건을 충족 : 과거·현재 사업에서 투자(100,000 SGD 이상) 유치, 정부 인정을 받거나 국제적 명성있는 인큐베이터/엑셀러레이터의 지원, 기술 기업을 창업하여 매각, 지식재산권 보유, 싱가포르에서 공동 연구

18) Singapore Ministry of Manpower(https://www.mom.gov.sg/passes-and-permits/employment-pass)
19) Singapore Ministry of Manpower(https://www.mom.gov.sg/passes-and-permits/entrepass)

- 최초에는 최대 1년의 기간을 부여하며 갱신 가능(최대 2년 단위)

- 가족 초청 가능(배우자·자녀와 부모의 초청 요건 상이)
  * 법적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는 DP(Dependant's Pass), 부모는 LTVP(Long-Term Visit Pass)

○ Personalised Employment Pass(PEP)[20]

- 고소득 EP 소지자, 외국인 전문가를 위한 제도(고용주 연계 불필요)

- 자격 요건 : 월 고정 급여 22,500 SGD 이상

- 최대 3년(갱신 불가)

- 가족 초청 가능
  * 법적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는 DP(Dependant's Pass), 부모는 LTVP(Long-Term Visit Pass)

○ Overseas Networks & Expertise Pass(ONE Pass)[21]

- 사업·예술·문화·학술·연구 분야의 최고급 인재를 위한 제도

- 신청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심사하며 부합하는 카테고리에 따라 신청

  ① 현재 또는 직전 직장 급여 : 직전 12개월 간 월 고정 급여 30,000 SGD 이상

  ② 취업 예정 직장 급여 : 싱가포르 기반 회사에서 월 고정 급여 30,000 SGD 이상

  ③ 뛰어난 성과 : 스포츠·문화예술·학술연구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이 있는 경우

- 최초에는 최대 5년의 기간을 부여하며 갱신 가능(최대 5년 단위)

- 동반 가족의 Pass 신청 가능
  * 법적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는 DP(Dependant's Pass), 부모는 LTVP(Long-Term Visit Pass)

---

20) Singapore Ministry of Manpower(https://www.mom.gov.sg/passes-and-permits/personalised-employment-pass)
21) Singapore Ministry of Manpower(https://www.mom.gov.sg/passes-and-permits/overseas-networks-expertise-pass)

정주여건

□ 기술 인재 유치를 위해 도입한 Tech. Pass[22)]

ㅇ 기업가·기술 전문가 등의 글로벌 기술 인재를 위한 비자 제도

ㅇ 자격 요건(둘 다 충족)

- 최근 1년 이내 마지막으로 지급된 월 고정 급여가 22,500 SGD 이상일 것

- 다음 중 하나에서 리더급으로 5년 이상 누적 경력 보유 : 기업 가치 또는 시가총액이 미화 5억 달러 이상이거나 미화 3천만 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기술기업, AUM(운용자산)이 미화 5억 달러 이상인 벤처캐피탈 운용사

ㅇ 최초 유효 기간은 2년, 갱신은 1번만 가능(2년)

ㅇ 가족의 체류를 스폰서 가능

* 법적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는 DP(Dependant's Pass), 부모는 LTVP(Long-Term Visit Pass)

□ (참고) Global Investor Programme(GIP)[23)]

ㅇ 글로벌 투자자를 위한 영주권 제도

ㅇ 자격 요건

- 사업체 소유주 : 사업 경력(최소 3년), 사업 매출(직전 연도 매출 최소 2억 SGD, 직전 3년 평균 매출 최소 2억 SGD), 지분(비상장인 경우 30% 이상), 산업(별도 지정)

* 투자방법 A or B or C

- 사업체 소유주의 차세대 : 직계가족 지분(최소 30% 보유 또는 최대 주주), 사업 매출(직전 연도 매출 최소 5억 SGD, 직전 3년 평균 매출 최소 5억 SGD), 본인이 회사 경영진의 일원일 것, 산업(별도 지정)

* 투자방법 A or B or C

- 급성장 회사의 창업자 : 가치가 5억 SGD 이상인 비상장회사의 창업자이자 최대 주주 중 하나일 것, 회사가 명성있는 VC 또는 PE로부터 투자받을 것, 산업(별도 지정)

* 투자방법 A or B or C

22) EDB Singapore(https://www.edb.gov.sg/en/incentives-and-programmes/incentives-and-facilitation-programmes/tech-pass.html)

23) Global Investor Programme, 싱가포르 경제개발청, 2025.

- 패밀리오피스 대표 : 사업·투자·경영 경력(최소 5년), 투자 가능 순자산(최소 2억 SGD)
  * 투자방법 C

○ 투자방법

- 투자방법 A : 싱가포르의 새로운 사업체 또는 기존 사업 확장에 1천만 SGD 이상 투자
- 투자방법 B : 싱가포르 기반 회사에 투자하는 GIP선정펀드에 25백만 SGD 이상 투자
- 투자방법 C : AUM(운용자산) 2억 SGD 이상의 싱가포르 기반 싱글 패밀리오피스 설립(5천만 SGD 이상이 싱가포르에 유입되어 지정된 투자 대상에 배분돼야 함)

○ 부양 가족(배우자, 21세 미만 미혼 자녀) 동반 가능하며 부모와 21세를 넘는 미혼 자녀는 LTVP(Long-Term Visit Pass) 신청 가능

6 두바이(UAE)

구분		대상자 (대상별 자격 요건 충족시)	기간	가족초청신청 (요건충족시)
두바이	Golden Visa	투자자, 기업가, 탁월한 인재 등	5년/10년	가능
	Green Visa	고숙련노동자, 프리랜서, 투자자등	5년	

자료 : UAE ICP(Federal Authority For Identity, Citizenship, Customs & Port Security)

□ UAE의 인재 유치 전략

○ 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골든 비자를 비롯한 장기 비자 제도를 도입하여 해외 고급 인재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동시에 자국민 고용 정책인 에미라티제이션(Emiratisation)을 추진
  * '25.6월 기준 UAE 총 인구는 1,135만명이고 자국민 비중은 약 11.9%[24]

□ Golden Visa[25]

○ 인재 유치를 위한 장기(5·10년) 거주 비자(자동 갱신, 스폰서 불요)

○ 대상 : 투자자, 기업가, 탁월한 인재 등

24) 박혜수, UAE 인구 통계로 보는 비즈니스 기회, 코트라, 2025.
25) UAE Federal Authority For Identity, Citizenship, Customs & Port Security(https://icp.gov.ae/en/services/golden-residency/)

- 부동산 투자자 : 2백만 디르함 이상의 가치를 갖는 부동산을 소유하였음을 나타내는 서류 등이 필요
  * 체류기간 : 5년
  ** '26.3월말 기준 1AED는 약 411.31원

- 기업가 : 혁신적이거나 기술적인 프로젝트, 프로젝트의 가치를 증빙하는 서류, 창업보육기관 또는 관련 당국의 서면 등이 필요
  * 체류기간 : 5년

- 탁월한 인재 및 희소 분야 전문가 : 의사, 과학자, 발명가, 운동선수, 우선순위 과학·공학 분야의 전문가 등(유형별 요건 상이)
  * 체류기간 : 10년

- 이외에 공인 투자 펀드의 증빙(2백만 디르함 이상의 잔고 보유)을 갖춘 투자자, 뛰어난 학생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음

○ 가족(배우자, 자녀)의 체류 허가 발급 가능

□ Green Visa[26)]

○ 프리랜서, 고숙련 노동자 등을 위한 거주 비자(스폰서 불요)

○ 대상

- 고숙련 노동자 : UAE 내의 유효한 고용 계약, 직업 분류 체계에 따라 기술 수준 1~3으로 분류될 것, 학사 이상 학력, 15,000 AED 이상의 월급

- 프리랜서·자영업자 : 노동부의 프리랜서·자영업 허가 취득, 최소 학력(학사, 전문학위 또는 이에 준하는 학위) 충족, 안정적 소득 또는 거주 기간의 지급 능력 증빙, 직전 2년간 프리랜서로서 연 소득 36만 AED 이상

- 투자자·사업 파트너 : UAE 내 프로젝트에 참여 또는 투자를 증빙, 당국으로부터 필요한 승인과 라이선스 취득

○ 갱신 가능한 5년 거주 허가

○ 가족(배우자, 자녀) 동반 가능

26) UAE Federal Authority For Identity, Citizenship, Customs & Port Security(https://icp.gov.ae/en/green-residency/)

7 한국

□ 외국인의 국내 입국

○ 외국인이 입국할 때는 유효한 여권과 사증(Visa)이 필요

*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이 면제 기간 내 입국시 사증 없이 입국 가능

○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일반체류자격* 또는 영주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함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서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으로 단기체류자격(관광, 방문 등의 목적)과 장기체류자격(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구분

□ 금융중심지 인재 유치와 관련하여 검토 필요성이 있는 장기체류자격

체류 자격		활동 범위 및 해당자 (대상별 요건 충족시)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주재 (D-7)	D-7-1	외국기업 국내지사 등에서 주재활동	3년
	D-7-2	해외진출 기업 근무 외국인력의 국내 본사 주재활동	
기업 투자 (D-8)	D-8-1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한국 법인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	5년
	D-8-2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 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	2년 (예비 벤처기업은 6개월)
무역 경영 (D-9)	D-9-4	회사경영, 영리사업	2년
특정 활동 (E-7)	E-7-1	전문인력 : 관리자 및 전문가(67개 직종) - 경제이익단체 고위임원, 기업 고위임원, 보험 및 금융관리자, 금융 및 보험 전문가 등을 포함	3년 (주무 부처 추천 우수 인재 등은 5년)
	E-7-S1	네거티브 방식 전문인력 중 고소득자	

자료 : 사증발급 안내매뉴얼(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8 결론

□ 부산 금융중심지를 위한 특화 비자 제도 필요

○ 카자흐스탄과 베트남은 금융중심지(AIFC, VIFC) 관련자를 위한 비자 절차 운영

○ 홍콩, 싱가포르는 상대적으로 좁은 지역을 대상으로 제도가 운영되므로 맞춤형 설계와 운용이 용이할 것으로 보이며 UAE는 해외 인력 의존도가 높은 자국 상황 반영된 비자 제도를 운영

○ 현행 부산시 광역형 비자 시범 사업*은 반도체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점을 감안할 때 부산 금융중심지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비자 제도가 필요

* 반도체·이차전지·미래 자동차 부품 분야 전문 학사 및 학사 과정을 대상으로 재정능력(1,600만원 보유) 및 시간제 취업 허가(인턴) 요건 완화[27)]

** 지역 정착, 인구 유출 억제 등을 목적으로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에게 비자 특례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부산에서는 인구감소지역(서구·동구·영도구, 모집대상 : 지역특화우수인재·지역특화숙련기능인력·지역특화외국국적동포)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중구·금정구, 모집대상 : 지역특화숙련기능인력)에서 추진[28)]

□ 종합 혜택 패키지 제공 필요

○ AIFC와 VIFC는 금융중심지를 위한 비자·조세 등 종합 혜택 제공하고 있어 신흥 금융중심지와 경쟁하려면 부산 금융중심지 종합 혜택 패키지가 필요

○ 한국의 탑티어 비자와 K-Tech Pass('25년 신설)

- 탑티어 비자는 학력*, 경력**,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국내의 첨단 산업**** 기업 근무 예정인 자와 가족(배우자, 미성년 자녀)에게 거주 비자를 부여하며 3년 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고, K-Tech Pass와 연계한 종합 지원 제공[29)]

* 세계 100위 이내 대학 석박사

27) 부산시, 부산시, 법무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공모 선정… 미래 신산업 분야 글로벌 인재 유치 본격화!, 2025.4.3.

28) 부산시, '부산시,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외국인 인재 모집 추진!', 2025.3.20.

29)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564/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W1taWdyYXRpb24lMkYyMjAlMkY1OTM4MTklMkZhcnRjbFZpZXcuZG8lM0ZwYXNzd29yZCUzRCUyNnJnc0JnbmRlU3RyJTNEJTI2YmJzQ2xTZXElM0QlMjZyZ3NFbmRkZVN0ciUzRCUyNmlzVmlld01pbmUlM0RmYWxzZSUyNnBhZ2UlM0QxJTI2YmJzT3BlbldyZFNlcSUzRCUyNnNyY2hDb2x1bW4lM0QlMjZzcmNoV3JkJTNEJTI2)

** 세계 500대 기업 3년 이상 근무 포함 8년 이상 경력자 또는 세계적 연구기관 3년 이상 근무 포함 박사 후 5년 이상 경력자
*** 연 근로소득이 1인당 GNI 3배 이상의 보수
****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 '26.3월 톱티어 비자 대상 분야 확대(첨단산업→과학기술 연구)등 개선 계획 발표[30]

- K-Tech Pass : 본인·가족(배우자·자녀)에게 최우수인재 거주 비자(F-2-T)* 발급(3년 경과 후 요건 충족시 최우수인재 영주 비자 전환 가능), 동반입국 허용범위 확대(부모·가사보조인까지), 출입국 우대카드, 근로소득세 50% 감면(10년), 직계 미성년 자녀 외국인학교 정원 외 입학 허용, 컨시어지 서비스 제공 등[31]
  * 1회 체류 기간 최대 5년

ㅇ 다만 탑티어비자는 첨단 산업에 국한되어 금융중심지를 위한 별도의 제도가 필요

□ 장기 체류 허용을 통한 정주 유도 필요

ㅇ 해외금융중심지는 장기 비자를 통해 인재를 유치

- 두바이의 골든비자는 장기(5년 또는 10년) 거주 비자이고 홍콩의 Quality Migrant Admission Scheme(QMAS)는 성취 기반 점수제를 통해 승인된 자에게 통상 8년의 체류 기간을 부여

ㅇ 부산 금융중심지 전문인력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장기체류자격의 체류기간 상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 전문인력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활동(E-7) 비자의 체류자격 상한이 3년(주무부처 추천 우수 인재 등은 5년)인 점 등을 감안하면 부산 금융중심지에 체류할 전문인력의 체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

□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활용

ㅇ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 외국인의 사증발급 절차 및 체류기간의 특례가 포함되어 있음

- 향후 체류기간 등을 구체화(고시 제정 등)하는 과정에서 두바이를 비롯한 해외 금융중심지와 경쟁 가능한 수준으로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30)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6p.
31) 산업통상자원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인재유치센터, K-Tech Pass 신청 안내, 2025.

정주여건

- 법안 제43조~제48조의 글로벌 생활환경 조성 조항을 기반으로 교육·주택·외국어 서비스 등 정주여건 종합 패키지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참고)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행정안전위원회 의결안) 제44조

제44조(외국인의 사증발급 절차 및 체류기간의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글로벌허브도시에 외국의 우수한 전문인력과 외국기업 및 외국기관의 유치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지정된 특구의 연구기관 · 기업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사증발급의 절차 및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구등으로 이전하는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부산광역시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